

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

과 명	분 장 사 무	비 고
총 무 과	서무, 인사, 관인과 도서의 관수, 문서, 연금, 기획, 통계, 회계,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	
종합민원실	1. 가사, 소년·가정보호·피해자보호명령·아동보호·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. 가사비송·가사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3.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접수 4. 민원안내	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 중 제1호, 제2호, 제4호는 가사과에서, 제3호는 총무과에서 각각 관장한다.
가 사 과	가사 및 소년·가정보호·피해자보호명령·아동보호·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재판참여,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와 기록·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	
후 건 과	후견관련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참여, 후견감독, 후견등기, 후견개시 조사에 관한 사항	후견과를 두지 않은 가정법원의 동과의 분장사무는 각 소관과에서 관장한다.
조 사 과	가사 및 소년·가정보호·피해자보호명령·아동보호·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, 가사비송·가사신청 사건의 조사명령에 관한 사항	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가사과에서 관장한다.
가족관계 등록과	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,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,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	가족관계등록과를 두지 아니한 가정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총무과에서 관장한다.

※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종합민원실, 가사과, 후견과, 조사과의 분장사무는 가사과에서, 가족관계등록과의 분장사무는 총무과 또는 가사과에서 관장할 수 있다.